

1. 개정이유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의 건설도급 특례와 관련하여 원수급인의 제출서류에 하수급인의 등록증 등을 추가하고, 지역고용촉진지원금·고용촉진장려금·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기간을 명확히 하며, 지역고용촉진지원금·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제의 대상에서 4촌 이내 혈족을 직계존비속으로 축소하는 등 지원제의 범위를 조정하며, 불필요한 일용 근로자 이직확인서 서식을 삭제하고,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명확히 하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조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수급인의 하수급인 신고시 제출서류에 하수급인 사업자등록증 포함 (안 제43제1항)

건설도급 원수급인이 6개 업종*에 해당하는 하수급인을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에 하수급인의 업종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포함

* 건설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사업자, 정보통신공사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 (「고용보험법」 제15조제2항 각호)

나. 고용장려금 신청기간 관련 근거 마련(안 제41조제2항 등)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역고용촉진지원금·고용촉진장려금·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의 근로자 등 정비 (안 제41조의2제1항, 제44조제3항)

1)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제의 범위에서 4촌이내 혈족·인척을 직계존·비속으로 조정

2)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제의 범위에서 비상근 촉탁근로자 삭제

라. 일용근로자용 이직확인서 서식 삭제에 따른 정비

(안 제82조의2 및 별지 제75호의5서식)

별지 제7호서식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별지 제75호의5서식 일용근로자 이직확인서 삭제

마. 예술인·노무제공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별도 규정(안 제101조제3항 및 제4항, 별표 2의2, 2의3 신설)

그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근로자에 해당하 는 별표2를 준용하던 것을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별도 규정토록 개선

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현행화(안 제25조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개정에 따라,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서 인용한 '소정근로시간' 근거규정이 제2조제8호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고용노동부령 제 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제1항 중 “사본을”을 “사본과 다음 각 호의 하수급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업등록증
2.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주택건설(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등록증
3.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전기공사업 등록증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5.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6.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증

제25조제1항 중 “「근로기준법」 제2조제7호”를 “「근로기준법」 제2조

제8호”로 한다.

제4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조업시작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41조의2제1항제2호 중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을 “직계 존·비속”으로 한다.

제44조제3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사업주(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제4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영 제26조제1항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5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영 제29조제1항의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82조의2제2항 본문 중 “이직확인서(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의5서식에 따른다)”를 “이직확인서”로 한다.

제82조의2제5항 본문 중 “이직확인서(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의5서식에 따른다)”를 “이직확인서”로 한다.

제101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58조제2호다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별표2의2와 같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58조제2호다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별표2의3과 같다.

제115조의4 본문 중 “별표 2의2”를 “별표 2의4”로 한다.

제125조의4 중 “제101조까지”를 “제101조제1항까지”로 한다.

제125조의10 중 “제101조까지”를 “제101조제1항까지”로 한다.

별표 2의2를 별표 2의4로 하고, 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의 1쪽 및 2쪽, 제5호의2서식, 별지 제7호서식의 1쪽 및 2쪽,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46호서식 뒤쪽, 별지 제75호서식의 제1쪽, 별지 제75호의2서식의 제1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5호의5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3] <신설>

노무제공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4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피보험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가 일반적으로 노무제공계약 중 보수, 계약기간 등 계약조건에 준하는 내용에 대해 계약 당시의 조건보다 2할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나. 계약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지연되어 지급된 경우
2.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또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또는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또는 사업장 내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4.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중단·폐지·해지·종료 또는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계약 해지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계약 해지를 권고 받은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 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계약조건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사업장 또는 노무제공장소로의 이동 등이 곤란하게 된 경우(이동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계약 당시와 지역을 달리하는 곳으로의 노무제공장소의 변경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사업장 또는 노무제공장소로 이동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고 기업의 사정상 계약 조건에 대한 변경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재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계약사항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계약조건에 대한 변경이 불가능하여 이직할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임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계약사항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기업의 사정상 계약조건에 대한 변경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11.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계약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거나 제공하게 된 경우
12. 계약기간의 만료, 그 밖의 사유로 노무를 계속 제공할 수 없는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노무제공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신설>

예술인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3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피보험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가 일반적으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중 보수, 계약기간 등 계약조건에 준하는 내용에 대해 계약 당시의 조건보다 2할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나. 계약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지연되어 지급된 경우
2.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또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또는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또는 사업장 내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4.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의 중단·폐지·해지·종료 또는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계약 해지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계약해지를 권고 받은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 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계약조건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따른 사업장 또는 노무제공장소로의 이동 등이 곤란하게 된 경우(이동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계약 당시와 지역을 달리하는 곳으로의 노무제공장소의 변경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사업장 또는 노무제공장소로 이동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고 기업의 사정상 계약조건에 대한 변경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재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계약사항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계약조건에 대한 변경이 불가능하여 이직할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임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계약사항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기업의 사정상 계약조건에 대한 변경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11.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계약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거나 제공하게 된 경우
12. 계약기간의 만료, 그 밖의 사유로 노무를 계속 제공할 수 없는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예술인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하수급인 명세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알록)		
원수급인	사업주	① 본사업장관리번호		②상호 또는 법인명칭				
		③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사업장	④ 대표자						
		⑤ 사업장(현장)관리번호						
		⑥ 명칭(공시명)		⑦ 보험사무대행기관				
하수급인 (1)	사업주	⑧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⑨ 사업장관리번호						
		⑩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⑪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⑫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⑬ 건설·공사·소방시설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증		등록증 종류	등록번호	등록일자		
하수급인 (2)	사업주	⑭ 하도급금액						
		⑨ 사업장관리번호						
		⑩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⑪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⑫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⑬ 건설·공사·소방시설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증		등록증 종류	등록번호	등록일자		
		⑭ 하도급금액						
		「고용보험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소재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

※ 앞쪽과 뒤쪽 모두 작성하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5일)
------	-----	---------------

신청인 (폐업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최종 폐업 사업장	전자우편(이메일):	
	④사업장명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소재지	
	⑦보험가입일	⑧폐업일
	년 월 일	년 월 일
	⑨구체적 폐업 사유	

○ 취업자 취직 증가거나 사업(자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 취직: 상용직·임시직·일용직·차근차근조사·예출산·종교봉사 등 * 사업(자영업): 사업자들특속 소지자·비밀던대채 대표자·부동산임대업자·채권추심원·다단계판매매 등	[] 취직 (취직내용: [] 사업 (사업내용: [] 아니요
㉞ 앞으로 새로운 직장에 취직 또는 사업(자영업)이 가능한 상황입니까? * 임신·출산·육아·질병·부상·가족 간병 등으로 본인이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태인 지 여부를 적습니다.	[] 예 [] 아니요 (해답이 곤란한 사유 :
○ 현재날 중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가 있습니까? * 폐업 시점에서는 아래와 같이 보험료를 체납 중인 경우 보험료 및 연금공과 전후 납부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피보험기간 : 1년 이상~2년 미만: 1회 이상, ②년 이상~3년 미만: 2회 이상, ③년 이상: 3회 이상	[] 있음(체납 중인 횟수: 회) [] 없음
○ 현재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구직신청을 하였습니까?	[] 예 [] 아니요
○ 근로자·예출산·노무제공자 피보험기간 합산일을 희망하십니까? * 종전제 근로자·예출산·노무제공자일 때 이미 가입금액을 받기 위해 3년 이내에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을 기한 한 경우, 근로자·예출산·노무제공자 피보험기간을 합산해서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희망함 [] 희망하지 않음

⑮ 고용센터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중 희망하는 항목에 체크해 주세요(복수 선택 가능)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의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단되고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반환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115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폐업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수수로 없음	
※ 아래 난은 적지 않습니다.							
처 리 수급자격 불인정 사유							
결 제	담당	팀장	과장	청장·지청장	결재 연월일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 제출) ①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려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하수급인 명세서에 하도급계약서 <u>사본</u> 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 제출) ① ----- ----- ----- ----- ----- ----- ----- <u>사본</u> <u>과 다음 각 호의 하수급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u> ----- -----.		
<신 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업등록증		
<신 설>		2.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주택건설(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등록증		
<신 설>		3.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		

<u><신 설></u>	호서식의 전기공사업 등록증 4. 「정보통신공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u><신 설></u>	5. 「소방시설공사법」 제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소방시설공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u><신 설></u>	6.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록증
② (생 략) 제25조(전체 피보험자에 대한 총 근로시간의 산정방법) ① 영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의 소정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2조제7호의 소정근로시간을 말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전체 피보험자에 대한 총 근로시간의 산정방법) ① ----- ----- ----- ----- ----- 「근로기준법」 제2조 제8호-----

한다)의 합계로 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의 신청) (생 략)	제41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의 신청)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조업시작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41조의2(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 제한) ① 영 제24조제6항 제5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1조의2(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 제한) ①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업주(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본인의 배우자, <u>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을 고용한 경우</u>	2. ----- ----- ----- <u>직계 존·비속</u> ----- -----
제44조(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①·② (생 략)	제44조(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26조제3항제1호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③ ----- ----- -----

결정의 통지, 수급자격의 인정	-----
신청, 수급자격증, 실업인정의	-----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81조, 제	-----
82조, 제83조부터 제91조까지,	-----
제92조의2, 제93조, 제99조부터	-----
<u>제101조까지</u> , 제103조부터 제10	<u>제101조제1항까지</u> -----
7조까지 및 제107조의2를 준용	-----
한다.	---